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주의사항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 시 **개인에 따라 선택할 수 없는 복무기관 또는 복무분야**가 있으므로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라며, 소집 대상자로 선발되면 소집일자 연기 및 취소가 제한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 재학생입영연기 또는 국외입영연기중인 사람, 소집대기중인 사람

※ 제한대상

①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학원 학력자 및 우선소집원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

② 사회복무 소집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 종료 또는 공소시효 완성된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후 행방불명 또는 직권말소된 사람 중 소재가 확인된 사람, 우선의무부과 의뢰된 사람, 소집 신청 당시 28세 이상인 사람(단, 5순위자 신청가능), 도망·신체손상 등 속임수를 쓴 사람, 소집대기기간이 3년차 이상인 사람 등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2026년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데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신청 방법**

(경로) 누리집→병무민원→본인확인서비스(본인인증)→사회복무→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선발)→신청→예→의무자 정보 입력→소집일자·복무기관 선택→접수

① 의무자 정보 입력 : E-mail,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계좌정보

② 시·군·구를 선택하고 복무기관 검색을 누르면 해당 시·군·구의 선택 가능한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표출 (지망별, 지원횟수별 경쟁률 등 표출)

☞ 소집일자에 “선복무”가 표시된 자리는 복무기관으로 먼저 출근하고 소집일부터 1년 이내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합니다.

③ 희망하는 소집일자·복무기관은 2지망까지 선택 가능하며, 신청 키<예>를 누르면 소집신청 접수 완료

□ **직업선호도 검사 방법**

(경로) 병무청 누리집 검색창→‘직업선호도’ 조회→직업선호도(사회복무)→검사실시

① 직업선호도 검사 결과 유형에 따라 복무분야(복무기관) 추천됨

② 본인선택 기관이 추천 복무분야(기관)에 해당 시 선발기준 반영(단, 행정지원 분야 제외)

③ 직업선호 유형은 본인선택 접수 마감일 18시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 검사결과 유효기간 없음, 검사 실시 후 24시간 이내 재검사 불가

□ **선택 범위**

○ 주소지 시·군에 위치한 출·퇴근 가능한 복무기관

○ 주소지 지방병무청 관내의 타 시·군에 위치한 복무기관
신청 시 다음의 출·퇴근 가능 사유 중 해당 사유를 선택
① 타 시·군 지역에서 가족・친지와 거주하는 경우
②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타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
③ 소집 전 해당 타 시·군 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경우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아닌 타 지방병무청 관내에 위치한 복무기관을 신청하는 경우는 자원관리청 변경 후에 소집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 사유 중 ①, ③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자원관리청 변경방법) 누리집→병무민원→사회복무→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 선택(선발)→신청 화면→지방청(변경 희망 지방청) 선택

○ 출·퇴근이 곤란한 복무기관에 선발되었을 경우는 지방병무청에서 직권 취소함 (기존 주소지 계속 거주 예정이면서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 복무기관 선발된 경우 포함)

□ **기관폐쇄 사유 등 선발 취소**

○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 이전·폐쇄 또는 예산 삭감 등으로 복무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감축되는 경우에는 다른 복무기관으로 재지정하거나 소집일자를 변경할 수 있음.

□ **복무기관 선택 제한**

○ 기관지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척추질환,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활동성 폐결핵 등 : 해당 임무수행 불가능 분야

○ 정신과 및 경련성 질환자 : 사회복지시설, 학습 지원 및 유치원・초・중・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

○ 병역법 제29조 제4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복지시설, 교육기관, 국가보안시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복지시설과 교육기관은 기소중인 사람 포함**

○ 병역법 제29조 제4항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 신청당시 형사재판 진행 중이었더라도 소집일 전에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본인선택 취소될 수 있음

○ 병역사항공개 신고의무자 및 부모·조부모가 4급 이상 공직자 : 아래의 복무기관 제한

신고의무자	지정을 제한하는 복무기관의 범위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 안보실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신고의무자	지정을 제한하는 복무기관의 범위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법원 소속 공무원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위원회 소속 공무원	해당 위원회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방의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시·군·구 교육청 소속 공무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 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해당 기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부·처·청 소속 공무원	해당 부·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 신고의무자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 사회복지시설장의 직계비속인 경우, 부모·조부모 등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복무를 제한 (해당 기관 선발 시 직권취소)

□ **소집통지서 교부** : 이메일과 병무청 앱으로 통지서 발송 (미확인시 우편통지)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

□ **유의사항**

○ 복무기관인 ○○구청에 선발되었으나, 실제로는 구청이 관리하는 근무지 중 한 곳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복무기관인 ○○교육(지원)청에 선발되었으나, 실제로는 해당 교육(지원)청 또는 근무지 중 한 곳인 학교(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복무기관에 따라 휴무일 및 근무시간(야간, 교대근무)이 다를 수 있습니다.